

N · E · W · S · P · L · A · Z · A

해외 경쟁정책 동향

본협회 조사부

EU편

유럽위원회, Deutsche Telekom 사의 새 요금제도 조건부 승인

유럽위원회의 Van Miert 위원(경쟁정책담당)은 '96년 11월 4일, 독일 우정성(German Federal 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BMPT)이 Deutsche Telekom 사에 대하여 사업자용 새로운 요금제도를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이번 동 위원회가 BMPT와의 사이에 합의한 당해 할인요금제도를 실시할 때의 조건 중 주요한 내용은,

① Deutsche Telekom 사와 경쟁사업자간의 네트워크 접속계약을 '9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할 것

② BMPT가 독일 시장에서 경쟁적 네트워크의 접속을 위한 제도개선을 같은 날까지 실행할 것이다.

이러한 합의 사항의 조건은 '96년 11월 1일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 것으로 된다.

이번 유럽위원회와 BMPT와의 합의는 유럽위원회가 Deutsche Telekom 사의 새로운 요금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긴급정지명령)을 내릴 것을 구한 Deutsche Telekom 사의 경쟁사업자인 대기업 6개사의 신고가 계기가 된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경쟁사업자에 대한 중대한, 또한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비결정을 신속히 채택하여 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다.

Van Miert 위원은 조사 절차의 진행을 2개월간 유보할

것에 합의하였으나, 동 위원은 '96년 12월 31일까지 경쟁사업자가 Deutsche Telekom 사로부터 공정한 조건으로 네트워크에 접속할 것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유럽위원회는 신속한 조치를 채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올해 초에 Deutsche Telekom 사의 새로운 요금제도(BMPT의 사전인가가 필요)의 심사를 개시하였다.

BMPT 및 유럽위원회는 '96년 6월, BMPT가 Deutsche Telekom 사 이외에 적어도 2개사에 통신사업을 허가하고 또한 Deutsche Telekom 사가 특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동 회사의 새로운 요금제도의 일부를 실시할 것을 승인한다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건은 ① 동사가 일반인인 개인이용자용 할인제도를 실시할 것, ②

경쟁사업자의 회선과 자사의 공공전화회선(PSTN)과의 접속을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등이다.

BMPT 및 Deutsche Telekom 사는 '96년 6월에 유럽위원회로부터 제시받은 6개 조건 중 5개 조건을 충족시켰다.

더욱이 Deutsche Telekom 사는 다른 회사의 회선을 이용하고 있는 특정의 이용자 그룹(CUG)에 관한 수량할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Van Miert 위원은 Wolfgang Botsch 우정성 장관에 대하여, Deutsche Telekom 사가 경쟁사업자에 대한 단순한 사용량할인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96년 6월에 유럽위원회가 조사를 중지하면서 언급한 비차별의 기본원칙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나, Deutsche Telekom 사의 회선에 대한 공평한 접속을 보장한다는 조건에 비추어 충분하지는 않다고 전하였다.

동 위원은 포괄적인 네트워크 접속은 독일 전기통신사업 시장의 자유화, 그리고 7월 17일의 Deutsche Telekom 사의 Atlas 계획과 Global One 두 가지 합작투자사업의 승인시에 붙여졌던 조건이 그 토대가 된

다고 강조했다.

Van Miert 위원과 Botsch 우정성 장관은 CUG 경쟁사업자가 Deutsche Telekom 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조건에 기하여 포괄적인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그렇지만 사업자간의 적절한 조정을 위한 교섭에는 사전 규제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양자는 네트워크 접속계약의 조건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결정했다.

① '96년 12월 31일까지 BMPT는 신청인에 대하여 특별 네트워크 접속번호를 배분하고, 또한 Deutsche Telekom 사에 허가한 바 제3자인 네트워크 운영자에 대하여 초 단위로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현행제도를 개정할 것.

② '96년 12월 31일까지 Deutsche Telekom사는 위의 규제에 적합하도록 요금등 일정한 계약조항, 기술협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네트워크 접속계약을 경쟁사업자와 체결할 것.

(96, 11/4, EU 발표문 & 국제상사법무, Vol. 25, No. 1, 1997)

EU각료 이사회 합병규제 규칙 개정에 대한 구주위원회안 부결

합병규제에 관하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구주위원회의 시도는 '96년 11월 14일의 각료이사회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좌절되었다. 당해안에 반대한 것은 경쟁정책을 독자적으로 전개하여 온 영국, 독일 그리고 덴마크, 스페인, 폴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등 7개국이다.

이들 국가의 이번 행동은 엄격한 구주위원회에 의한 합병심사 대상의 확대에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산업계를 낙담시켰다.

Karel · Van · Miert 위원(경쟁정책담당)은 통일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사안의 일부가 구주위원회의 소관 밖에 놓이게 된다고 하여 EU합병규제규칙의 적용을 받는 대상과 기준의 인하를 제안한 바 있다.

두 개 국가의 경쟁담당 당국에 제출이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 구주위원회에 심사권한을 주는 동 위원회의 제2의 제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다. 이 제안은 두 개 국가에 관계되는 합병 신고의 경우 신고 내용을 관계사업자가 관계국의 당국 모

두에게 제출하지 않고 구주위 원회에게만 제출하도록 하는 「원·스톱·숍」의 원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96년 11월 14일의 각료이사회에서는 회원의 태반이 두 개 국가에 제출 의무가 중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구주위원회의 의견에 찬성하였으나 동 위원회의 당해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이 옳다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인식을 심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96, 11/15, Financial Times)

유럽위원회, 11억 달러 규모의 핀란드 기업결합 저지

유럽위원회는 20일 핀란드의 두 주요 잡화 체인간의 20억 FM(미화 11억 달러) 규모의 기업결합 제안을 저지하였다.

이는 경쟁관계에 있는 유럽 연합 공급업체들로부터의 경쟁을 봉쇄할 수 있는 국내 독점사업자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유례가 드문 조치로서, 동 위원회는 핀란드의 최대 도·소매 잡화 그룹인 Kesko사가 지난 5월 두 번째로 큰 경쟁업체인 Tuko사를 취득한 것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다.

이는 1990년 이후 동 위원회가 저지한 여섯번째 기업결합이다.

이 연계가 이루어졌더라면 핀란드 도·소매 잡화 시장의 60퍼센트를 점유하는 그룹이 탄생하였을 것이었다. EU는 Kesko사의 도·소매 잡화사업에 대한 지배가 소규모 사업자들을 해하고 다른 회원국 소매업체들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였다고 하였다.

“지역적 수준으로든 전국적 수준으로든, Kesko사와 Tuko사의 소매시장 점유율 합계는 최소한 55퍼센트이다”라고 동 위원회는 밝혔다. 또한 Kesko사의 지배적 지위는 단골 고객 우대제, 체인점 상표 부착 제품의 유통망 및 구매력의 통합으로 인해 더욱 향상되었다고 동 위원회는 첨언했다.

동 결정은 “효과적인 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Kesko사는 이를 Tuko사의 사업 중 상당부분, 특히 판매량의 약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도·소매사업 부문을 매각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동 회사는 Tuko사의 Antilla백화점 체인과 기자재 사업은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핀란드 공정거래청(OFC)은

핀란드법 하에서 국내 기업결합을 저지할 권한은 없으나 이 기업결합이 핀란드에서 독점적 공급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우려에서 이 사건을 유럽위원회에 회부하였다.

OFC 청장인 Matti Purasjoki는 기업결합을 고려중인 다른 핀란드 기업들이 유럽 경쟁법을 염두에 두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Kesko사의 재무담당 이사인 Matti Honkala는 동 회사는 당해 거래를 국내 문제로 간주하였고 당해 기업결합이 봉쇄당할 위험은 극히 적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예외적인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Honkala는 Kesko사가 경비를 약간 절감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하였으나, 분석가들은 동 회사는 지불한 것보다 얻는 것이 더 적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동 회사는 Tuko사에 20억 FM을 지불하였으며 30억 FM 상당의 부채를 인수하였다.

Kesko사의 주식은 어제 4퍼센트 이상 하락하여 61.81 FM이 되었다.

(96, 11/21, Financial Times)

유럽위원회, EU 기업결합 규제규칙에 관한 7번째의 금지 결정 내려

유럽위원회는 '96년 12월 4일, Société Européenne des Produits Refractaires (SEPR: 프랑스), Elektroschmelzwerk Kempten(ESK: 독일) 및 NOM(네덜란드)에 의한 실리콘 카바이드 생산에 관한 합작투자사업 설립에 대하여 EU 기업결합 규제규칙(이사회규칙 제4064/89호)에 관한 심사 결과, 공동체 시장에 적합치 않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유럽위원회는 본건 결합에 의해 유럽경제지역(EEA)에서의 연마재, 내화재용 실리콘 카바이드 생산시장에서 당사자 시장 점유율은 60퍼센트를 넘으며, 게다가 역내의 경쟁사업자 3사는 어느 쪽이든 비교적 소규모로서 각사의 점유율은 10퍼센트에 달하지 못하고, 더욱이 역내에 대하여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의 잠재적인 경쟁사업자들은 물품 공급처로서 유럽 이용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이 상황은 앞으로 2, 3년 동안에 변화할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

므로, 본건 결합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창출·강화를 가져와 공동체 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당사자는 ESK의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에 있어서의 재무상 곤란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럽위원회는 동사의 독일 소재 공장에 대하여서는 높은 생산성이 인정되므로 본건 결합이 동사의 재무상 곤란을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만일 본건 결합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동사가 시장에서 퇴출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 동시장에서의 경쟁조건은 본건 결합을 인정하는 경우보다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당사자는 본건 결합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중국으로부터의 실리콘 카바이드 수입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지지를 철회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유럽위원회는 관계기업의 일부 인사의 지지 철회가 즉각 반덤핑관세의 철폐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만일 이것이 철폐된다고 하여도 본건 결합에 의한 경쟁상 문제점이 적절히 해결되는 것으로 되지는 않으므로, 당해 신청

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본건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상기 규제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결정은 동 규칙 시행 이후 일곱 번째이고 '96년에 들어서는 세 번째이다.

(96, 12/4, 유럽위원회 발표, 국제상사법무, Vol. 25, No. 1, 1997)

EU, BT/MCI 기업결합 조사

유럽위원회는 세계 제2위의 통신기업을 탄생시키게 될 British Communications사와 MCI사간의 200억 달러 규모의 기업결합 계획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영국 당국에 의해 이미 진행중인 조사에 이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동 위원회는 당해 거래가 '96년 11월에 발표되었을 때 조사할 의향을 비쳤었고, 2일 유럽연합 관보에 경쟁업체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의 논평을 권유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당해 조사를 개시하였다.

유럽위원회는 1개월 내에 당해 기업결합을 승인하거나, 4개월 동안의 상세한 조사로 확대하게 된다.

유럽위원회가 이 정도 대규

모의 통신회사 기업결합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동 위원회는 예전에 France Telecom사와 Deutsche Telekom사간의 Global One 연계 및 기존의 BT사와 MCI사간의 제휴를 포함하여 몇몇 통신회사간의 제휴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고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한 적은 있다.

동 위원회는 네덜란드의 PT T Telecom사, 스웨덴의 Telia사, Swiss PTT사 및 스페인의 Telefónica사간의 Unisource 제휴 및 Unisource 제휴사들과 미국 AT&T사간의 Uniwold 연계를 승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는 스페인과 스위스가 자국의 통신시장을 전적으로 자유화할 것과 AT&T사가 투명한 요금 협정을 운영할 것을 포함하는 조건이 부과되었다.

동 위원회는 만일 BT/MCI 기업결합으로 인해 동 기업이 EU 내에서 반경쟁적 지위를 형성하게 된다고 결정할 경우 당해 기업결합의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쟁법 전문 법률가들은 주요 규제 장벽은 유럽이 아니라 반트러스트법에 의해

어떠한 외국 회사도 자국 시장이 경쟁에 대해 개방되어 있지 않다면 미국 회사 20% 이상의 지분 취득이 금지되고 있는 미국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 및 외국인투자위원회는 당해 기업결합을 검토중이며 이는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기업결합의 합법성을 주장하면서 BT사 및 MCI사는 미국과 유럽연합에 대하여 영국은 인가를 받은 105개 통신사업자들이 이미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 대해 개방된 국가임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에 영국은 1998년 시한 이전의 통신시장 자유화에 관한 EU 협정에 동참하였다. 영국은 또한 44건의 "국제 설비" 인가를 발하여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이 기존의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지 않고 자신들의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허용했다.

(97, 1/3, Financial Times)

일본편

금융 등 경쟁촉진 - 구조개혁보고 경제심위 초안

일본 수상의 자문기관인 경제심의회 행동계획위원회(위원장: 水口弘一 노무라 종합연구소 상담역)는 13일 경제구조개혁보고서의 초안을 정리했다.

이는 의료·복지, 금융 등 중점 6개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 철폐 및 경쟁원리 철저 등 고비용 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분야는 의약품 가격 결정과정의 투명화, 금융분야에서는 업체별 사회의 업무분야규제의 철폐를 구하고 있다. 경제심위는 '96년 12월중에 성안을 수상에게 제출했다.

대상분야는 의료, 금융 외에 토지·주택, 고용·노동, 정보통신, 물류 등 6개 분야다. 초안은 각 분야에 정통한 학자를 책임자로 하는 작업부회가 10월에 정리한 제언을 비판·검토한 것이며, 가격·진입규제의 원칙적 철폐라는 동 제언의 기본이념을 받아들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만 금융분야의 핵심인 개혁실시시기의 명시는 없애는 등, 일부에서 내용이 후퇴한 면도 있다.

의료분야는 본래 입원할 필요가 없는 고령자가 간호를 위해 병원에서 지내는 「사회적 입원」으로 대표되는 비효율의 시정이 주안점이다. 연간 27조 엔이라는 국민의료비의 고비용 체질 시정을 위해, 진료보수점수 및 의료용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중의협, 후생상의 자문기관)의 회원 재검토 및 의사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후생성 소관의 공익법인이 민간간호업자에게 발행하는 「실버 마크」제는 진입규제 및 카르텔의 온상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여, 가격경쟁촉진을 위한 근본적 재검토를 제안하였다.

금융분야는 폭넓은 경쟁의 실현, 자산거래의 자유화, 규제·감독체제의 재검토의 세 가지를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쟁촉진책은 제1단계로서 보험업과 기타 금융업의 자회사에 의한 상호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제2단계로서는 개인저축의 효율적 운용을 철저히 할 목적

에서, 증권거래법을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거래법」과 업법으로서의 「자산관리·운용서비스업법」으로 분할할 것을 제안하고, 최종기한을 금세기 중으로 하여 일거에 개혁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외의 분야에서는 토지·주택세제의 전면 재검토, 노동기준법의 여성보호규정의 삭제, 통신진입 규제의 철폐, 내항해운·항만·트럭운송에 관한 규제의 철폐 등을 포함하고 있다. (96, 11/14,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수도 미터기 담합 20개사 형사고발

지방자치단체 발주의 가정용 수도미터기를 제조·수리하는 업자 20개사가 납품에 관하여 담합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4년 전에 공정취인위원회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배제권고를 받고 난 후에도 입찰담합을 계속하였다는 혐의가 강해져, 공취위는 '96년 11월 16일까지 형사고발을 단행할 방침을 굳힌 모양이다.

업자의 행위는 악질적으로서, 행정처분만으로는 위법행위를 배제하는 것이 곤란하다

고 공취위는 판단하였다. 고발되면 '95년 3월의 하수도 담합 사건 이래 '96년 6월에 신설된 공취위 특별심사부의 첫 고발 사건으로 된다.

악질적인 담합의 혐의가 있는 곳은 金門제작소, 愛知시계전기, 오사카기공 등 20개사이다. 공취위는 1992년 12월, 동경도 외에 오사카부 및 후쿠오카현 등 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수도미터기의 입찰에서 담합하였다고 하여 28개사에 대하여 독금법 위반으로 권고를 발하였다.

이 중 金門제작소 등 각 사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에 관계없이 동경도 발주의 가정용 수도미터기 납품가격의 인위적 인상을 목적으로 수주조정을 반복했다는 혐의가 있다. 공취위는 금년 7월에 각 사에 현장 조사를 하였고, 계속 심사중이다.

미터기류에 관하여서는 金門제작소 등 가스누출 방지용 미터기 제조업체 6개사가 가격유지 및 암묵적 카르텔을 결성하고 있다고 하여 공취위는 1992년에 배제권고를 하였고 1994년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으나, 金門제작소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에 불복하여 재심

청구를 다루고 있다.
(96, 11/16,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휴대폰 3사 현장조사 - 암묵적 재판매가격유지 협의

휴대전화의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점 등에 가격유지를 지시하는 암묵적 재판매가격유지를 행하였다는 혐의가 있어, 공정취인위원회는 '96년 11월 28일 關東甲信越을 영업권으로 하는 NTT 이동통신망(통칭 NTT 도코모), 동경 디지털폰, 츠카셀룰러 동경 본사 및 지점 등 20개소 이상을 독점금지법 제19조(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금지)위반혐의로 현장조사하였다.

공취위의 조사 및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NTT 도코모 등 3사는 과당경쟁에 따른 가격인하를 경계하여, 판매점에 자사 제품의 판매가격을 대폭 낮추지 말도록 지시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휴대전화는 1994년의 자유화 이후 계약자가 급증하여, '96년 10월말 현재 가입대수는 약 1,616만 대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인하 경쟁이 격화되어, 현재의 판매가격은 대당 1

만 엔 대에서 2만 엔 전후가 주류이며 희망소매가격의 4분의 1이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휴대전화 각 사는 가입자를 확보하여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판매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매입가격을 하회하는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판매대수가 늘어나는 반면, 저가판매 경쟁이 수익 측면을 압박하는 상황으로 되고 있다고 한다.

NTT 도코모 홍보실에서는 「현장조사는 받았으나, 당사로서는 가격구속의 의사는 없었으며 공취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싶다」고 하고 있는 외에, 동경 디지털폰, 츠카 동경도 「조사의 상세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므로, 아직 조사중」등으로 논평하고 있다.

(96, 11/29, 일본경제신문)

NTT 분리·분할결정 - 장거리 1사, 지역 2사로

일본의 堀之内久南 우정상과 일본전신전화(NTT)의 宮津純一郎 사장은 '96년 12월 6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NTT의 경영형태 재편에 관한 우정

성과 NTT의 합의내용을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새롭게 제도화되는 순수지주 회사를 바탕으로 NTT는 장거리 통신부문을 분리하고 지역 통신부문을 동서 2사로 분할하며, 그 시기는 99년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10년간에 걸친 분리·분할논의는 마무리되고, 세계 최대의 통신기업인 NTT 재편이 점점 이루어질 것이다.

우정성, NTT의 합의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분리·분할 후의 장거리회사, 동서 지역회사의 전 주식을 보유하고, 기초적인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특수회사가 된다. 장거리회사는 완전한 민간주식회사로서 국제통신에의 진입을 인정받는다.

정부는 다른 국제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차하는 업무 등 일부 국제업무에 대하여서는 우선적으로 진입을 처리하여 주고, 재편 후에 본격적인 진입을 허용할 것이다.

합의의 실현에 필요한 독점금지법 개정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양도차익과세의 면제 등 특례조치는 「우정성이 정부 내의 조정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동성은 재편을 위하여 각 방면으로 조정에 들어갔으며, 98년도 세계 개정에서의 실현을 목

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의 공정하고 유효한 경쟁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작성을 향후 계속하는 것으로 되었다. 동 성은 분할 후의 지역회사에 대하여 경영효율화를 요금책정의 기준으로 하는 yardstick 방식 등 경쟁원리의 도입을 검토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NTT의 주주는 그대로 지주회사의 주주로 된다. 분사화된 NTT 데이터통신 등의 회사를 지주회사의 산하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하여 갈 것이다. 宮津 사장은 장거리회사에 대해 「언젠가는 주식상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장래 자본분리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정성은 사업을 국내업무에 한정된 NTT법에 관하여 신법 제정을 포함,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차기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NTT 측은 「실시에는 법안 제정 후 2년정도 걸린다」고 하고 있어, 재편시기는 1999년도로 될 전망이다. 또 宮津 사장은 재편에는 「지주회사와 연결납세 등 전제조건 정비」가 불가결하다」고 강조하였다.

(96, 12/6, 일본경제신문)

일본공취위, 지주회사 해금 본격 논의

1. 지주회사 해금논의의 진전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현행 독금법에서 금지된 지주회사 해금 쪽으로 방향을 잡고, 법안의 세부적인 조정을 개시키로 했다.

검토 대상은 대규모 지주회사의 대상, 설립 시의 심사방법, 사후점검 등이다. 일본 공취위가 검토하고 있는 자유화의 기본 방향은 재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은 금지하되 총자산이 5천억엔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서류 없이 허용함으로써 독과점의 폐해를 예방하면서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업형태를 취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노동성이 정리한 보고서에서 쟁점의 하나인 노사문제가 진전되었기 때문에 해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전신전화(NTT)회사의 분리·분할의 결정으로 전제가 되는 지주회사 해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취위는 조속히 기술적인 문제를 매듭짓고 내년 봄까지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주회사 해금 논의는 '95년 6월 이후 당시의 여당의 의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단되고 있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 노조의 단체교섭권 확보등 노사문제에도 이견이 있었으나 이 문제는 노동성이 「현행의 노동법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임으로써 해결의 전망이 나왔다. 그동안 공취위는 여당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여당에 의한 지주회사의 본격 논의가 1997년 초에는 넘어갈 가능성이 강하기 때문에 통산성, 대장성 등과 정부내의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규모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기업집단이 되어 경쟁이 제한된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일정 규모 이하의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신고불요로 무조건 인정할 것인지 허가나 신고제로 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되어 왔다.

경쟁 상황의 사후 점검을 위하여 지주회사로 하여금 매년 업무 내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던지, 공취위가 실시 상황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다. 해금 시기는 「주지기간을 거쳐 '98

년 4월」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NTT분리·분할이나 금융 개혁을 위한 은행·증권·보험의 상호참입을 위하여 지주회사의 해금이 필요하다라는 등이 해금논의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되어 있다.

2. 지주회사 금지제도 재검토의 배경

지주회사 금지제도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왔다. 최근 일본 경제에 있어서의 엔고의 급속한 진전, 제조업등 산업의 공동화 우려 등 내외 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규제 완화의 관점에서 그 존재 형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독점금지법상의 규제라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당해 규제가 사업자의 활동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제한을 과하는 게 아닌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오늘날 일본 국내 시장을 보다 개방적인 것으로 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의 하나로 되어 있어 시장의 개

방성·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일본국으로서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현행 지주회사 금지제도가 일본 경제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게 된 것이다.

근래 경제계를 중심으로 지주회사의 유용성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주장되고 있다.

- ① 전략적 그룹 경영과 사업 경영의 분리
- ② 원활한 인사·노무관리
- ③ 코오퍼레이드·벤처 및 벤처·비즈니스의 진흥
- ④ 기업 그룹 재편성의 유연화·다각화 촉진
- ⑤ 금융지주회사에 의한 우월적인 리스크 차단과 복합적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현행의 지주회사 금지제도에 대해서 지주회사를 통한 사업 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에 의한 폐해가 생길 경우, 독금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규제하면 된다는 폐해규제론도 있으며, 기타 외국에 있어서는 지주회사 금지제도는 없고, 국제적인 조화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국제적 정합성론으로부터의 비판도 있다.

지주회사 해금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도 있다. 지주회사를 부활하는 경우 구미 국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계열회사의 지배를 강화하는 문제점도 있다. 계열회사 지배는 지주회사가 산하 기업의 행동을 구속해 계열거래를 시키는 것으로 배타적 차별적인 반경쟁행위이다.

특히 일본인의 경우 동아리(동료) 의식이 강해 계열거래가 이루어지기 쉬운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무차별적, 비배타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견제시스템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 부활이 계열지배만을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이 문제는 국제적인 통상 마찰로 발전할 소지가 충분하다.

3. 지주회사 금지제도의 개편방향

유럽에서는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하는 기업 그룹은 적지 않으며, 미국에 있어서는 지주회사 산하의 자회사를 통괄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하여 지주회사를 이용하

는 이유로서는 국제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이 주로 각국의 법제도의 상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회피하던가 연결납세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독점금지법 개정문제연구회는 지주회사문제에 대하여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한다는 목적을 발판으로 삼고, 일본국 경제의 실상에 유의하면서, 일본국 시장을 보다 개방적인 것으로 하고 또한 사업자의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그 규제 목적을 발판으로 삼아 검토한 결과 지주회사 금지제도의 기본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지주회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취인위원회로서는 이 보고서의 제언을 발판으로 필요한 법률개정을 행하게끔 입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순수지주회사의 해금 원안이 명확해졌다. 지주회사의 형태에 관계없이 「원칙자유」로 한다는 생각으로, 총자산 5,000억엔 이하의 경우는 신고도 필요없도록 하는 등 절차도 간단히 한다.

많은 업종을 망라적으로 포괄하여 총자산이 20조엔 정도

에 달한다든지, 동 업종의 유력 기업끼리 설립하는 등, 강력하고 대형인 지주회사로 되는 경우는 금지한다. 독점·과점 등의 폐해를 예방하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형태 구성을 촉진한다.

정부는 공정취인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종안을 굳혀 '97년 2월 초에 여당에 제시, 3월에 정기국회에 독점금지법 개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998년 1월에라도 시행되어, 재벌해체 이래 금지되어 왔던 순수지주회사가 해금된다.

해금의 기본은 분사화 등의 형태와 규모 등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부분해금」이 아니라, 「원칙자유」로 하여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경우만을 공취위가 실질적으로 체크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설립절차도 과잉규제를 막는 관점에서 간단히 하는 방향으로 정하였다. 원안에는 총자산 5,000억엔 이하의 회사가 분사화 등으로 지주회사로 탈바꿈하는 경우는 신고가 일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한다.

5,000억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의 사후적 신고 외에 매년 1회의 정기적인 실태보고를 요구할 것이다.

신고, 보고내용은 연결재무제표에서 대상으로 하는 내용에 한정시켜, 서류작성 등의 과도한 부담을 피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을 빼면 5,000억엔을 초과하는 국내기업은 약 200개 사로서, 대부분의 기업의 경우는 지주회사 설립의 신고가 불필요하게 된다.

사전심사도 불필요하게 되나, 공취위는 독자적인 조정과 사후신고 등에서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면, 설립 전이면 정지를, 설립 후이면 해소, 영업·주식양도를 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지대상은 「복수의 사업분야에 걸치는 유력기업을 다수 거느릴 것」이라는 것을 축으로 검토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업종에 걸치는 형태에서는 재벌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 구재벌계인 6대 기업집단 중에서 가장 작은 쓰미토모 그룹의 총자산 21조엔(은행을 제외) 초과가 기준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동 업종의 유력기업끼리, 그리고 유력한 자동차회사와 철

강회사 등 특정의 상품에서 독점적인 힘을 보유할 지도 모르는 회사끼리 같은 지주회사에 참가하는 경우도 기업결합 규제와 주식보유규제에 준하여 금지한다.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서는, 대장성의 금융제도조사회에서 금지대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왔다.

(96, 12/7, 97, 1/19, 일본경제신문, 96, 2월호 공정취인)

일본공취위 품질보증등, 기준·인증의 감시 강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 적합 여부를 증명하는 기준·인증제도의 감시를 강화한다. 특정의 기업만을 인증한다든지, 실버마크 등과 같이 인증을 얻지 못하면 판매할 수 없는 등 신규진입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사하여 자유경쟁을 촉진할 것이다.

조사요원을 확충하고, 문제가 있으면 감독관청에 개선을 요구하며, 검사기관에도 경고 등을 통하여 시정을 요청할 것

이다. 적발이 늘게 되면 불필요한 기준의 폐지와 독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재검토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취위는 약 150개인 기준·인증제도의 일부가 배타적으로 운용되어 경쟁제한의 온상으로 되고 있어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느냐든지, 특정의 공익법인만이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아 자의적인 검사로 일부의 기업만이 인증을 얻어 영업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취위는 병원용 급식과 침구에 관한 기준·인증제도가 경쟁을 제한한다고 하여 검사기관 등에 처분을 내렸다. 앞으로는 실버 서비스진흥회에 의한 실버마크가 복지용 기구의 판매를 저해하고 있지 않은지 감시할 것이다. 전기·가스기기, 통신기기, 운송기기, 의약품 등의 감시도 강화된다.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경우, 제도 그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감독관청에 개폐를 요구할 것이다. 운용상의 문제이면 검사하고 있는 공익법인과 업계단체뿐만 아니라 독점적으로 이익을 얻은 기업에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

한다.

(97, 1/17, 일본경제신문)

운수사업 진입규제완화, 1997년도로 앞당겨

일본 운수성은 항공, 택시, 버스 등 운수사업에 대한 진입규제의 근간인 「수급조정권」을 2001년까지 완전히 철폐하기 위해, 1997년도부터 완화책을 앞당겨 실시한다.

항공에서는 신노선예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면허기준을 4월이라도 철폐하고, 택시는 증차한도를 완화하여 증차 및 진입이 쉽도록 한다. 버스로 전세용 증차신청을 탄력적으로 인가한다. 수급조정을 전폐함에는 법개정이 필요하며 시간이 걸린다.

이는 실질적인 완화책에 착수하여, 운수분야의 경쟁촉진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

운수분야의 대부분의 경우 면허와 인·허가시의 조건에 「서비스의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는 기준이 있다. 이 수급조정조치에 기하여 공급과잉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발급하지 않

미국편

SAS사와 유나이티드 항공
제휴, 미 반트러스트법 적용제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3개국의 합작항공회사인 스칸디나비아항공(SAS)은 5일, 유나이티드 항공과의 제휴에 관하여 미국 정부로부터 반트러스트법 적용제외의 인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SAS와 제휴하고 있는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도 유나이티드 항공과의 제휴에 대해 똑같은 인정을 받고 있어, 유럽·미국 3사연합은 가격조정을 포함한 광범한 제휴관계에 들어간다.

미국정부는 상호간에 항공회사의 자유로운 이착륙을 보증하는 "open sky" 조약체결과의 교환으로 반트러스트법의 적용제외를 인정하는 전략으로 유럽 각국 항공시장의 개방을 추구하여 왔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3개국은 작년 5월에 미국과 동조약을 체결하였다. 과거에 세계 항공회사간에는 노선의 공동운항 등을 축으로 한 제휴가 다수 있으나 반트러스트법에

으므로, 이는 최대의 진입장벽이 되어 있다.

운수성은 행정개혁위원회의 제언을 받아, '96년 12월에 수급조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운수판 빅뱅」을 표명하였다. 앞으로 3~5년 내에 항공법과 도로운송법 등의 업법 개정절차를 취하게 될 것이다.

항공분야에서는 진입을 인가함에는 그 노선의 여행객수가 「연간 35만명 이상일 것」이라는 면허기준을 설정하여 놓고 있다. 새로운 회사인 「스카이마크 에어라인」 등의 신규진입이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국내선의 거점인 하네다공항의 이용구역이 늘어나는 것을 기화로, 1997년도중에 이 기준을 폐지할 것이다.

두번째 회사가 진입하는 노선에도 같은 형태의 기준이 있어, 이도 폐지할 방침이다. 경쟁이 격화되면 업체들이 재산이 맞지 않는 노선에서 철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한 생활노선의 유지를 포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다. 택시는 증차를 제한하고 있는 「적정대수」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지방운수국이 7월에 산정하는 대수에서 증차한도를 10퍼센트 인상함과 함께, 신규진입

을 구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일부를 할당할 방침임을 통보했다.

동경지구의 법인택시는 약 25,000대인데, 2,000대 정도의 증차의 여지가 생길 전망이다. 상황을 보아 추가 증차할 여지를 20퍼센트로 넓힌다. 교토의 MK택시가 동경 진출을 표명한 것도 규제완화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버스에 대하여서도 증차를 규제하여 왔으나, 관광시즌 등에 가동률 정점이 8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역과 대도시권에서는 증차신청을 탄력적으로 인가할 것이다.

각 분야에서 수송력의 공급을 늘리면 서비스와 가격면에서 경쟁을 촉진시킨다. 운수성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면허와 인·허가의 수는 1985년 말에 2,017건이었으나 1995년도 초에 1,607건까지 감소하였다.

수급조정의 폐지는 규제건수를 더욱 줄임으로써, 그 이상으로 운수성의 재량권한을 대폭으로 감축하는 의미를 지닌다.

(97, 1/30, 일본경제신문)

의해 가격의 상담이 불가능하여 제휴효과를 그다지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장애를 극복하는 반트러스트법의 적용제외는 이미 KLM 네덜란드 항공-미국 노스웨스트 항공, 스위스 항공-미국 델타 항공 등이 인정을 받고 있다.

미국 제2위인 유나이티드 항공과 유럽에서 2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루프트한자, SAS 연합이 똑같은 관계에 들어간 것으로서, 영국항공의 아메리칸 항공과의 제휴교섭에 관하여 미국과 "open sky" 교섭을 진행하는 영국, 자유화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 온 프랑스에 도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96, 11/6, 일본경제신문)

미 대법원, 지역전화 경쟁촉진 접속규칙 정지 결정

미국 지역전화시장 경쟁촉진의 최후의 방법으로 기대되고 있는 「통신회선 접속규칙」이 법원의 가치분에 의해 이에 대한 실시가 정지된 이 사건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10월 31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의 가치분 취소청구

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FCC는 동 결정에 불만을 품고 즉각 불복신청을 하였지만, 규칙 시행의 지연에 따라 미국 통신시장 행정의 혼란이 깊어지는 것은 확실하다. 일부에서는 규칙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것은 '96년 2월의 통신법 개정 이후에 FCC가 8월에 결정한 규칙이었다.

이 규칙에서 FCC는 지역전화시장에의 신규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진입업체에 의한 일반이용자에 대한 재판매를 전제한 「도매」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여기에는 일반적인 것보다 최대 25%의 요금을 할인하는 것 등을 근간으로 하는 광범한 경쟁활성화 대책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 GTE 및 옛 AT&T사 계열의 지역전화 회사들이 반발, 세인트루이스 연방지방법원에 재검토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동 지방법원은 1997년 1월까지의 심리가 완료되기 전에 규칙의 시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FCC 외에 AT&T사 등 장거리회사는 즉각 실시를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이번의 결정이유 등에 대하여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관계자간에는 심리를 신중히 진행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보여지고 있으나, FCC 등은 이번의 결정이 대법원 판사 1인에 의한 판단인 점을 이유로, 같은 날 대법원 판사 전원에게 의한 결정의 재검토를 청구하는 신청을 제기하고 있다.

FCC는 이미 미국 장거리통신회사 및 일본의 국제전신전화(KDD) 등 몇 개사에 대하여 새로운 규칙의 시행을 전제로 한 신규분야진출 등을 인가한 상태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업무개시를 각사의 판단에 따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규칙의 1월 이후의 실시에 대하여서도 장애가 불투명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6, 11/1, 일본경제신문)

Sandoz사와 Ciba사의 기업결합, 미국에서 승인받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7일 스위스 제약회사인 Ciba사와 Sandoz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였으나 이에 엄격

한 조건을 부과하였다.

기업결합의 결과 탄생하는 새로운 기업인 Novartis사는 특허를 획득한 유망한 유전공학기술 및 암 관련 기술에 대한 접근을 다른 회사들에게 허용하여야 한다.

FTC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동 회사는 이미 독일의 BS AF사에 북미 옥수수 제초제 사업부문을 6억 9,500만 달러에 매각하였고, 미국의 Central Garden & Pet 사에 벼룩·진드기 방제 사업부문을 4,100만 달러에 처분하였다.

비록 분석가들은 FTC의 승인을 환영하였으나, 부과된 조건에 대해서는 실망의 빛이 역력했다. Ciba사의 주가가격은 2 스위스 프랑이 하락하여 1,625 스위스 프랑이 되었고, Sandoz 사의 주가가격은 4 스위스 프랑이 떨어져 1,525 스위스 프랑으로 되었다.

이들간의 기업결합은 Novartis 사의 주식거래가 개시되는 12월 23일에 완료될 것이다. 당해 기업결합의 마지막 단계인 Ciba Speciality Chemicals의 분리는 '97년 3월 이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Novartis사는 Glaxo Wellcome 사와 함께 전세계에서 가

장 큰 제약회사가 될 것인데, Sandoz사와 Ciba사의 1996년 최초 9개월간 판매 부문 전 세계 시장점유율은 4.5퍼센트이다.

Novartis사는 또한 농학, 영양학 및 복합재료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995년에 이들 두 회사들은 360억 스위스 프랑(27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Novartis사가 다른 회사들의 지적재산권과 교환으로 제공하여야 할 기술들은 HSV-tk라 불리는 암 치료법, 체외에서 행해지는 유전자 치료법 및 관련 기술들이다.

Novartis사는 프랑스의 Rhône-Poulenc사가 지배하는 미국 회사인 Rhône-Poulenc Rorer 사에 비배타적인 HSV-tk 라이선스를 허용하여야 한다. 동 회사는 또한 Ciba 사가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소재 생명공학 기업인 Chiron사에 5년에 걸쳐 6,000만 달러를 HSV-tk 로열티로서 지불하여야 한다.

당해 승인으로 인해 Novartis사는 몇달간 준비하여 왔던 기업결합 계획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작업인력의 약 10퍼센트인 12,000명의 직원이

감축될 것인데, 이는 대부분 행정직 및 마케팅 부서에서 이루어지며 연구개발 부서 및 판매 부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96, 12/18, Financial Times)

미국 반트러스트법 역외적용 확대에 제동, 법무부 또다시 패배 - 일본제지 카르텔 사건 기각

미국의 국가정책이나 다름없는 반트러스트법의 역외적용 확대방침에 미국 사법부로부터 “정지” 신호가 내려졌다.

9월 3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1990년의 일본제지의 카르텔 사건 재판에서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서면법은 완전히 미국의 영역외에서 행하여진 공모·카르텔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 사건기각의 판결을 내렸다(U.S. v. Nippon Paper Industries Co. Ltd., DCMass, Crim No. 95-10388-JLT, 9/3/96).

반트러스트법에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는 미국외에서 협정(카르텔)을 체결함으로써 서면법의 단속을 교묘히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에

대하여, 셔먼법의 입안자인 셔먼의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었다.

“만약 어떤 범죄가 미국 밖에서 행하여진 경우, 미국에서는 그 범죄를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그 위법한 결합이 미국외에서 형성되어 미국 내로 재산이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재산은 우리의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압류라는 민사적 구제수단도 취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에 이해관계를 갖는 어떠한 자도 당사자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도 미국인도, 대단히 많은 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미국의 관할 밖으로 나감으로써 법의 형사적 부분을 회피할 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 만일 그들이 미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민사소송의 적용을 받는다. 외국인은 그 공모참가자 누구라도 미국내에 없거나 또는 그 재산이 미국내에 있지 않으면 마음대로 결합 또는 공모를 할 수 있을 것이다(21 Cong. Rec. 2461).”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Joseph L. Tauro 판사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기소장에서 일본제지(1993년 十條제지와 山陽國策의 합병에 의해 탄생,

주된 사업지를 동경에 두고 있음)의 전신인 十條제지(이하 十條사)와 미국내에서의 판매를 위해 팩스용지를 수출하고 있는 일본의 상사간의 수직적 공모(vertical conspiracy)를 충분히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또 셔먼법의 형사규정은 일본의 十條사 등 팩스용지 제조업체에 의해 완전히 역외에서 행해진 이른바 가격카르텔 행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일본제지에 대한 대배심기 소장(Indictment)〉

기소장에 따르면, 공모가 행해진 1990년 당시, 十條사는 일본의 공장에서 팩스용지를 제조,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지 않고 두개의 일본 상사, 즉 일본지 펄프상사(Japan Pulp & Paper Co.(이하 JPP사))와 미쓰이물산(Mitsui & Co., Ltd.(이하 미쓰이사))에 판매하였다.

또한 JPP 사와 미쓰이사는 각각 미국의 현지 자회사에 수출하고, 이들 미국 현지 자회사들이 미국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었다.

공모는 1990년초에 일본에서 개최된 회합에서 시작되었

으며, 十條사와 다른 일본의 팩스용지 제조업체들(구체적인 회사명은 거명되고 있지 않음)은 북미로 수출되는 팩스용지의 가격을 인상할 것에 합의하였다고 되어 있다.

기소장에는 이러한 회합에 일본의 상사와 그 미국 현지 자회사가 참가하고 있었다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공모를 효과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十條사와 다른 팩스용지 제조업체는 팩스용지의 가격을 인상하였다고 되어 있다. 미쓰이사와 JPP사는 북미에서 인상된 가격으로 팩스용지를 판매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이 공모에 참가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제지는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동 회사에 대한 대인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기소장에는 셔먼법 제1조 위반이 왜 성립하는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소의 기각신청을 행하였다. 그러나 Tauro판사는 일본제지의 다음과 같은 미국과의 접촉에 근거하여, 보스턴 지방법원에 의한 대인관할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1993년 이래, 일본제지는 워싱턴 주 시애틀에 두 개의 사

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소에는 8명의 종업원이 있었다.

이 사무소 중의 하나는 시장 조사, 품질검사와 함께 미국에서 일본제지에 의해 구입되는 연 2억 7,000만 달러 이상의 인쇄용지, 나무조각의 일본에의 수출준비에 종사하고 있고, 또 하나의 사무소는 일본의 일본제지 공장에 수출하기 위해 미국의 공급업자로부터 연간 약 4,000만 달러의 통나무와 재목의 구매에 종사하고 있다.

시에틀의 사무소는 미국에 은행구좌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에 수출하는 자재의 구입대금, 종업원의 급여, 사무소경비는 이 구좌에서 지불된다.

더욱이, 일본제지는 워싱턴 주 롱뷰에 있는 제지회사 North Pacific Paper Corporation, Inc.(이하 NOR PAC)의 지분 20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다.

NORPAC의 연간매출액은 3억 5,000만 달러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제지의 종업원과 임원은 미국에서 그 공급업자와의 거래사업을 행한다든지 NORPAC의 사업을 감독한다든지, 업계회의에 출석한다든지 기술계약을 교섭하기 위해 미국을 일상적으로 방문

하였다.」

이 건에 관하여 법무부는 항소할 것이 거의 틀림없다. 상급심에서는 보스톤 연방지방법원의 이 “획기적”인 판결은 아마 파기될 것이다. 서면법의 역외 적용에 관하여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간에 구별은 없다고 종래에 생각되어 왔기 때문이다.

(96, 국제상사법무, Vol. 24, No. 12)

영국편

영국, 디지털방송 수신기 규제에서 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

영국 정부는 디지털 텔레비전 수신용 디코더(암호해독장치)에 관한 규제의 골격을 확정했다.

이에는 선발주자인 호주의 미디어왕 머독 산하의 위성방송회사 BSkyB 사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지도 모른다」고 하는 경쟁 회사들의 주장을 배려하였다. 디지털 텔레비전 디코더는 인터넷 접속 등 가정용 정보단말기로서 보급이 예상되고 있다.

영국 통상산업부는 의회에서 심의중인 디지털 텔레비전 규제책 중에 디코더 기술과 디지

털방송 서비스를 방송사 각각 평등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규제책은 '97년 1월 7일부터 시행된다.

규제의 준수 상황은 영국의 통신감독기관인 OFTEL이 체크한다. OFTEL은 정부의 요청을 받아 규제의 원안이 될 자문서를 발표하고, 1997년 2월 초까지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하여 상세한 규제사항을 결정한다.

영국에서는 BSkyB사가 1997년 말을 목표로 200채널의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한다. 뒤이어 영국방송협회(BBC)등이 1998년에 지상파를 사용한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외에, CATV 각 사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디코더의 사양 통일도 요구하고 있어, 선발주자인 BSkyB사의 디코더가 사실상의 표준으로 된다는 견해가 강하다.

후발주자 BBC등도 BSkyB사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디코더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BSkyB사가 경쟁상 부당하게 우위를 점한다는 염려가 강

하게 대두되어 왔었다.
(96, 12/30, 일본경제신문)

BA·AA, 미 반트러스트법 적용제외 신청 - 유럽위원회는 영국 제소 위협

American Air(AA)사와 British Air(BA)사는 10일, 미국 교통부에 대하여 양사의 제휴를 반트러스트법에서 적용제외해 줄 것을 신청했다.

영국정부는 이미 제휴의 거점이 되는 런던 히드로 공항의 이용구역 일부양도를 조건으로 승인할 자세를 보이고 있어, 미국 정부의 대응이 초점으로 된다. 이에 대하여 경쟁기업들은 일제히 양국정부에 대해 승인조건을 엄격히 설정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여,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기업연합의 형성은 조건투쟁의 단계에 들어갔다.

AA사와 BA사는 작년 6월에 운항협력을 포함한 광범위한 제휴에 합의하였다. 양사가 결합하면 전부 합쳐 미-영간 여객수송능력의 6할을 보유하게 된다. 이때문에 영국과 미국의 경쟁당국은 최근 양사에 허여되어 있는 히드로 공항의 이용구

역 중 1주당 168회분을 다른 회사에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안을 정리했다.

그러나 미국 United Air사 등은 노선의 신설, 확대의 여지가 작다고 하여 한층더 조건의 강화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AA사와 BA사는 10일의 회견에서 강하게 반론하여, 미국과 영국 정부간에 교섭중인 항공자유화(open sky) 교섭이 타결되면 「노선의 신설·확대가 한층 용이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교통부는 항공자유화의 실현을 제휴승인의 전제로 하고 있어, 최종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13일 영국이 BA사와 AA사간의 제휴제안을 승인할 경우 영국을 제소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경쟁담당 위원인 Karel Van Miert는 당해 거래는 대서양 횡단 항공로의 경쟁을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는 유럽위원회와 영국정부간의 대결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영국 정부는 당해 거래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현격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영국 정부는 또한 당해 제휴에 의해 발생하는 경쟁 문제에 대한 관찰권 문제를 제기했다. 영국 통상산업부는 13일 “유럽위원회는 통상산업부 장관의 정책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라고 발표했다.

영국 공정거래청은 당해 회사들이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의 1주당 168회분 이용구역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조건으로 당해 거래를 승인했다.

그러나 영국 통상산업부 장관인 Ian Lang에게 보낸 서한에서 Van Miert는 “그러한 협정의 체결은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Van Miert는 당해 거래가 런던-보스턴, 런던-시카고 및 런던-뉴욕 JFK공항간 노선을 포함하는 몇몇 주요 항공노선에서 준독점 상태를 형성할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한 고위 관리자는 13일 “우리에 관한 한 당해 문제는 이용구역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하였다.

Van Miert는 서한에서 BA의 이용구역 매각은 EU 경쟁규칙상 허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다. 그는 과거에 Sabe-

na 항공 및 Swissair사간의 것과 같은 제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이용구역의 무상양도를 요구한 적이 있다.

다른 관리들 또한 168회분 이용구역 이상의 양도-약 400회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 서한에서 Van Miert는 당해 협정은 영국과 미국간의 모든 노선에서 경쟁을 상당히 제한할 것이라고 하였다. "13개 노선에서 BA/AA는 경쟁을 100퍼센트 제거할 것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비록 동 위원회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단독 관할권을 갖고 싶어할 것이지만, 영국 당국이 EU조약 제85조하에서 스스로의 평가를 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Van Miert는 유럽위원회는 스스로의 예비적 분석과 충돌하는 결정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로마 조약 제89조가 보통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어떠한 거래가 EU내에서의 경쟁을 손상할 위험이 있을 경우 동 위원회에 당해 거래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을 근거로 동 위원회의 제휴 제안 조사권을 옹호했다.

"우리는 두 개의 별도 절차를 거쳐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이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싶다"고 그는 말하면서, 당해 거래의 승인은 거의 확실히 경쟁업체로부터의 이의제기를 촉발하여 동 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BA사는 13일 영국 통상산업부가 영국법 및 EU법하에서 어떠한 경쟁 문제이든지 검토하기에 적절한 당국이라고 언급하였다.

동 회사는 다른 EU 항공사들도 미국 업체와 제휴하였지만 어느 항공사도 유럽위원회나 자국 경쟁당국에 의해 조사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97, 1/4, Financial Times, 97, 1/11, 일본경제신문)

기타

영국공정거래청장 및 독일연방 카르텔청 장관, EU 합병규제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표명

영국공정거래청(OFT)의 존 프리즈만 장관과 독일연방카르텔청(FCO)의 데이타 볼프 장관은 1996년 10월 22일 「EU 가맹국간의 경쟁법에 있어 상호관계」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국제법조인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의 「벌린」회의에서 전일 공표된 EU 합병규제규칙 개정에 대한 구주위원회안에 반대한다는 요지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동안은 「원·스톱·숍」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합병심사를 보다 통일화할 목적으로 구주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되는 합병기업의 매상고 기준을 획일적으로 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프리즈만 장관은 「합병신고가 당해 코스트를 진정으로 경감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을 수반하지 않는 방안인 경우 찬성에 인색하지 않겠다.

그러나 구주위원회안과 같이 획일적인 매상고 기준 인하에 대해서는 당해 문제의 해결에의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또한 실제 마이너스 효과가 플러스 효과를 상회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EU 합병규제규칙에 있어서는 규제 대상이 되는 매상고 기준이 ① 관계 회사 전체의 연간 매상고 합계가 50억 ECU를 초과하거나, ② 관계사업자가 적어도 2개 회사인 경우 각각의 공동체내 매상고가

2억 5000만 ECU가 초과되어 야만 한다.

구주위원회는 당해 대상고 기준에 관하여 각각 ① 30억 ECU 초과, ② 1억 5000만 ECU 초과로 인하고, 여기에 EU 가맹국 중 3개국 이상의 경쟁당국에 신고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서는 각각 ① 20억 ECU 초과, ② 1억 ECU 초과로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각료이사회에 제안하고 있다.

프리즈만 회장은 「이러한 대상고 기준의 획일적 인하는 구주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전수를 두배로 증가시켜 동 위원회의 합병에 관한 「task force」 인원을 대폭 증가하여야 할 필요성에 부딪히게 된다.

다른 편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EU 역내 규모에서 경쟁상의 문제를 제기시키지 않고 EU 역내 시장에서 1개국 내지 2개국의 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소규모합병안전은 구주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이 점에 관하여는 이미 구주위원회에 신고된 합병 안전 중 약 35%가 가맹국 1개국의 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 장관은 이번의 합병규제 규칙이 개정되는 경우 합병 심사에 관한 한 동 위원회에의 집권화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카르텔 및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관한 심사에 대하여 동 위원회가 가맹국에의 분권화를 제안하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이점은 왜 생겼을까?」 답은 구주위원회에 의한 합병규제규칙의 집행이 EC경쟁법 제85조 및 제86조의 집행보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 중에서도 구주위원회의 제안에서는 EC경쟁법 제85조 제1항에 기초한 심사는 가맹국에 분담시키고, 보다 흥미깊고 매력적인 동법 제85조 제3항에 근거한 적용 면제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나는 구주위원회가 매력적인 것은 자기들이 관장하고, 쓰레기같은 건은 가맹국에 밀어내는 것에 대하여는 의문을 펼쳐 낼 수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동 장관은 합병규제규칙의 집행이 성공하고 있는 것은 구주위원회가 한정된 수의 안전에 대하여 기간이 제한된 심사에 많은 인력 자원을 투입하고

명백하게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구주위원회는 합병사안에 대하여 합병규제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수속개시 후 4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함).

한편 EU경쟁법 제85조의 집행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동 위원회가 건수에 압도되어 통상 심사 기간의 제한이 없이 대부분의 사안이 최종 결론 없이 종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슬화하였다.

「나는 합병 규제가 집권화됨으로써 구주위원회는 제85조의 실패를 되풀이 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

나는 진짜 문제는 EU경쟁법 제85조의 집행을 누가 하는 데 있는지가 아니라 동조가 많은 폐해가 없는 소규모 협정을 위반한 피의행위도 다루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 정부는 수속을 간소화하고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해결책이 분권화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동 해결책 중 중요한 것은, ① 현재 합병 규제의 분야에서 설정된 바와 같이 구주위원회와 가맹 각국간에 사안의 관할

구분을 명확히 할 것 ② de minimis 원칙의 적용에 관계되는 매상고 기준을 인상할 것 ③ 수속개시에서 결정까지 기간의 제한을 설정할 것 등 세가지이다.

이러한 해결책은 특정의 논리가 농도 깊게 투영된 것이다. 여기에서 그 논리란 합병규제규칙의 수속이 성공하고 있는 부분을 제85조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한편 합병규제규칙에 제85조라는 매력적이지 않은 규정을 적용하라는 것은 분명히 비논리적이다. 구주위원회가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독일 FCO의 데이터 볼프 장관은 「매상고 기준의 인하는 가맹당국과 구주위원회 사이에 사안의 배분의 적정화를 기하고자 하는 동기준의 목적을 손상시키는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구주위원회는 상세한 심사 대상이 되는 합병건수가 1993년의 59건에서 1995년에는 113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1996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 장관은 실질성장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매상고 기준은 사

실상 인하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볼프 장관은 합병규제규칙의 개정은 제도의 개선과 독립된 EU경쟁청의 창립과 링크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 않은 경우 현행의 구주위원회를 포함한 각국간 시스템상의 차이와 동위원회가 취급하는 사안의 증가로 보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EU경쟁청 창설 제안에 대해서는 기타 EU가맹국으로부터 전면적인 찬동을 얻지 못하고 있다.

(96, 10/22, 23. 공정거래청, Financial Times)

미국 반트러스트 국장대행 WTO가 「무역과 경쟁」을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 - 런던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에서의 강연

크라인 반트러스트 국장대행은 미국은 WTO에서 「무역과 경쟁」을 의제로 하는 안을 경계를 가지고 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동 국장대행은 11월 18일 런던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에서의 강연에서 WTO는 당해 의제안

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각료 회의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EU는 무역 및 시장 진입에 관한 경쟁법의 적용에 관하여 다국간의 규칙을 WTO에서 교섭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 국장대행은 「WTO 회의에서 다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리스크를 수반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WTO에 가맹한) 각국간에 경쟁규칙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기준(Minimum Standard)에만 맞는 것은 실효성이 결여된 규칙으로 낙착될 것이라 단언했다.

또한 동 국장대행은 WTO의 분쟁 처리절차는 어떠한 형태이든 소추재량권 및 법적 의사결정에 관하여 가맹국의 국가주권을 간섭하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WTO의 파넬은 높은 수준의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기업비밀과 연계되는 개별사례와 관련된 심사에는 부적당하다고 술회하였다.

- 합병, 카르텔, 시장진입 -

크라인 국장대행은 WTO 이외에서 계속되고 있는 국제적

노력에 대해서는 세가지 타입의 경쟁상의 문제에서 결실을 가져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세가지 타입은 ① 복수국가당국에 의한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국제적 합병 ② 국제 카르텔 사건 ③ 시장진입 저해 사건 등이다.

동 국장대행은 보다 쉬운 문제는 국제적인 합병심사라 하고 각국의 경쟁당국은 적어도 비공식 기준으로 이미 합병에 관한 협력에 대하여 기밀정보 이외의 정보의 공유를 인정함으로써 당해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국제적 카르텔 사건에 대해서는 각국 당국의 심사 및 소추수속이 당해 사건의 국제적 확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각국 당국이 집행을 주저하고 있다고 슬회했다.

동 국장대행은 국제적인 소추는 때때로 대인 관할권 및 수속이 문제가 되고 해외에 존재하는 물증, 공술 조서를 경쟁당국이 입수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하여도 일반적으로 커다란 곤란이 따라다니도록 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동 국장대행은 스위스 회사와 미국 회사에 의한 공업용 다

이아몬드에 관한 가격 인상 카르텔에 관한 형사사건을 예로 들고 있다. 당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증거가 미국 당국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미국 외의 국가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은 세계의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거대한 금전을 도취(盜取)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무역담당(the trade Community)의 주의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카르텔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국적과 관계없이 당해 카르텔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나 소비자는 피해를 입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소추하고 있는 라이신(lysine)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의 판매는 판매금액 기준으로 약 4분의 3이 일본에서 거래되고 있다.

일본의 소비자는 본건 위반 카르텔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믿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당해 제품을 구입한 전 세계의 소비자가 당해 카르텔에 의해서 부당하게 인상된 대가를 지불함

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 국제 협정 -

크라임 국장대행은 몇가지의 사례를 들고 국제 협력이 추진되어 정보교환이 진전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동 국장대행은 국제적 반트러스트 집행 원조법(The International Anti-trust Enforcement Assistance Act of 1994, IAEEA)은 사법성 및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정보의 기밀유지를 행하고 외국당국과의 사이에 증거의 상호교환을 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동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협정의 체결에 관하여 무역 파트너인 각국과 교섭하는 것은 사법성으로서는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이다」라고 슬회하였다.

또한 동 국장은 미국이 OECD의 경쟁법·정책위원회에서 멤버인 각국간에 「하드 코아에 대한 카르텔」을 초점으로 두 국가간 협력 협정을 체결하도록 제창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동 국장대행의 의견으로서는

「이러한 반경쟁적 행위를 특징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는 논의의 기다릴 것 없이 당해 제안이 채택될 것이 틀림없다. 이외에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가격구속, 시장분할이라는 「분명한 위법행위」이므로 각 기업의 기업비밀이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된다」

또한 동 국장대행은 미국과 캐나다가 상호 협력협정에 의해서 양국의 시장에 영향을 주는 가격구속, 시장분할에 관한 몇가지 사건에 대하여는 합동심사가 행해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경쟁당국인 산업성 경쟁정책국은 사법성 및 FTC에 대하여 FAX 용 감습지에 관한 가격구속 사

건에 관하여 베이스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증언 청취 등 합동심사를 하였다. 동 국장대행은 그 결과 몇가지 유죄가 인정되어 수백만 불의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보고했다.

- 적극적 예양 -

크라인 국장대행은 시장진입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국내사업자가 외국사업자의 침입을 저지하는 반경쟁적 행위가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술회하였다.

무역의 관점에서 보면 배타적인 국가내의 경제는 실업 및 전반적인 경제 후생의 저하를 가져와 기업의 침입제한에 의

해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글로벌 화가 진행되는 경제에 있어서는 외국 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는 민간의 시장 제한에 대하여 무역 당국이 엄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하여 놀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동 국장대행은 사업부로서는 두 나라간 협정의 체결과 다국간에 의한 심신협력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두 나라간의 협력 협정이나 「적극적 예양」협정은 경쟁 당국간에 있어 적절하고 조직적인 증거 수집, 통보 및 상호 협의를 가능케 한다.

(96, 11/21, 사법성 발표 11/21, Anti-trust & Trade Regulation Report)

짧은 글 긴 생각

시간이 중요하다

세계적인 경영컨설턴트인 톰 피터스는 경영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라도 성급한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아이아코카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아이아코카가 클라이슬러의 최고경영자로 있을 때 덮개가 없는 차, 즉 Convertible car를 개발하기 위해 기술책임자에게 모형을 제작하라고 지시했다. 기술책임자가 표준운영절차를 검토해본 후 9개월 이내에 시제품을 만들겠다고 답변하자 아이아코카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자네는 내 말뜻을 못 알아 듣는군. 당장 차 한대를 구해서 윗부분을 쇠톱으로 잘라내란 말이야.”

그리고는 윗부분을 없앤 시제품 자동차를 타고 시내를 직접 돌아다니며 반응을 조사한 뒤, 그 차를 기본으로 하여 생산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큰 성과를 거두었다.

줄속에 따를 하지도 문제지만 정보화사회에서는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